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 의무화 등>

■ 인요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392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의무 규정 (안 제48조의2 제7항 신설)	2
2.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 규정(안 제48조의3 제4항 신설 등)	5
3.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 등(안 제48조의4 제6항 등)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인요한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7. 9.

다. 회 부 일 : 2025. 7.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신고·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의무 규정(안 제48조의2 제7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및 비용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제7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2(침해사고의 대응 등) ⑦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및 비용 부담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안 제48조의2 제7항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지난 SKT 해킹 사고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¹⁾에서 이용 계약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기존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상 침해사고 관련 규정들은 침해사고의 신고, 원인 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 등 침해사고 자체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와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²⁾,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³⁾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1) 2025년 5월 8일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 개최

2)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업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업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3)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 따라서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침해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위약금 면제 등을 규정하려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수가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⁴⁾,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⁵⁾.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피해의 구제 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⁶⁾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율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의안번호 제2210170호(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제2210314호(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제2211546호(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 의안번호 제2210762호(이해민의원 대표발의)

6) 의안번호 제2210586호(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0937호(최민희의원 대표발의)

2.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이용자에게 통지할 의무 규정(안 제48조의3 제4항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3 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u>절차</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u>절차와 제4항에 따른 이용자 통지</u> ----- --.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침해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한 사실
통지 의무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안 제48조의3 제4항은 침해사고 신고와 마찬가지로 해당 이용자에게도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통지할 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단, 2024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887건⁸⁾으로 일 평균 약 5.2건의 침해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침해사고에 대한 이용자의 판단 및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음.
- 따라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모든 침해사고에 적용하기보다는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침해사고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므로⁹⁾ 개정안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7)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2024년 사이버 위협 동향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2025.1.24.

9)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5. (생략)

○ 따라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미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개정안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같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취지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1항 후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나 신고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함.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의무를 규정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2211402, 이상희의원 대표 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통지를 의무화하면 사업자가 침해사고 신고를 꺼려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지의무 대상 사업자를 한정하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큰 중대한 침해사고만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3. 침해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 제출 명령 등(안 제 48조의4 제6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 48조의4 제6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의 제출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할 수 있음(안 제48조의7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
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2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생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	⑥ ----- ----- ----- ----- -----

현행	개정안
료의 제출을 <u>요구할</u>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⑧ (생략) <u><신설></u>	-----명할----- ----- ----- ----- ----- ----- ----- ----- ----- ----- ⑦·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7(이행강제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자료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제출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현행	개정안
	제1항에 따른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만분의 7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루당 7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미이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¹⁰⁾.
- 안 제48조의4 제6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명령’으로 변경하고 자료제출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강화된 의무이행수단을 통해 침해사고 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특정 의무 불이행이 해소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 명령이라는 의무에 대한 이행 확보 측면에서 이행강제금이 적절함.
- 반면, 과태료는 행정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부과가 불가능함.
- 다만,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은 삭제하지 않아 중복 부과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10)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상대방은 금전적 제재를 중복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새로 이행강제금을 도입할 때에 기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자료제출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